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정 2015. 2. 3. 제6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84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기탁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
3. 국가지원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책사업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기획처장, 훈련처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간사는 학생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관련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장학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장학생

제6조(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경기력이 우수한 학생
3.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
4. 교내활동(근로, 자치활동, 체육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학생
5. 수혜조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학생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7조(자격제한) 장학금 신청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및 평점평균 2.5미만인 학생
2. 재입학자, 졸업예정자, 학기초과자, 졸업탈락자
3.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학생

제8조(선정절차) ① 장학생 선발은 학과장이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장학생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를 작성하여 학장이 확인한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② 체육학과의 경기력우수 장학생 선발은 각 부 지도교수가 경기력을 근거로 경기력실적순위표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훈련처장을 경유, 스포츠과학대학장이 확인한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9조(장학생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고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4장 장학금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기간이 지정된 장학금과 별도의 규정이 있는 장학금은 그에 따른다.

제11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금액은 장학금 재원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휴학을 한 학생
3. 수혜정지 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학생
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5장 등록금감면 장학금

제13조(당연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자녀(직전학기 70점 이상)
2. 북한이탈주민 자녀(직전학기 70점 이상)

제14조(면제 또는 감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1. 현 국가대표선수
2. 현 상비군
3. 현 주니어대표 및 꿈나무 대표
4. 전 국가대표 및 전 상비군
5. 경기력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부 지도교수가 특별히 추천한 자
6.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소속 학과장이 추천한 자

②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징계처분자의 장학금 지급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이 종료된 학기이후 다음기간 중에는 등록금감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1. 근 신 : 1학기간
2. 유기정학 : 2학기간
3. 무기정학 : 3학기간

제16조(대상자 및 인원수의 결정) ① 매학기 등록금감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인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4조 당연면제 대상자는 징수율 기준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세부시행 사항) 기타 장학금의 종류, 이중수혜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15. 2. 3. 제6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규정(규칙 제586호) 및 한

국체육대학교 기성회비 면제감액에 관한규정(제596호)에 의거 시행한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비 면제 감액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

1. 대상자 인적사항

201 학년도	제 학기	장학명	
학부(과)명		학 년	
학 번		성 명	(인)
연 락 처 (휴대전화)		학점	
		평점	
통장번호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2. 내용 [활동내용 또는 학과장 추천내용 기술]

--

3. 붙임서류(해당자)

가. 통장사본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201 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 . .

추천자

학과장

(인)

확인자

학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체육학과 경기실적 순위표

부명 :

* 전체학생 순위를 표기

순위	학년	학번	성명	대회명	기간	성적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년 월 일

작성 자 : 부 지도교수 : (서명)
확인 자 : 훈련처장 성명 : (서명)
확인 자 : 스포츠과학대학장 성명 : (서명)

※ 작성방법

1. 【경기력순위실적표】 각 종목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가 직전학기 대회비중도 및 성적순위에 의거 경기력실적순위표를 작성 후 훈련처장이 확인한다.
현 국가대표 → 현 상비군 → 현 주니어대표 및 꿈나무 대표 → 전 국가대표 및 전 상비군 → 기타 경기력 우수자
2.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및 평점평균 2.5미만 인자
 - 재입학자, 졸업예정자, 학기초과자, 졸업탈락자(총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작성)
 -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자
3. 【비고】 란에 경기력우수, 당연면제자(국가보훈자, 새터민)로 기재